

제2656호
2019. 5. 1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 제2019-376호 : 2019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2
- 제2019-38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76호

2019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목 적

- 2019년도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사업시행기관

- 지정 기관 수 : 1개
- 서비스제공기관 자격
- 서울특별시 중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p>(1)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모집 : 양정보수교육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 DB관리 : 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 활동수당 지급, 보험가입 등 · 긴급돌보미(월급제 돌보미) 운영(선택사항) <p>(2) 이용자 가정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서비스 제공기관 책임 하에 아이돌보미에게 위임 가능 (이용가정에 사전고지) <p>(3)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시 연계 * 가구 유형, 지원년도 등 판별 및 사업비 지급은 별도 절차 없이 이용, 가정 관할 지역 기관에서 협조 · 안전사고 관리 · 돌보미 활동 여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돌보미 매니저 활동, 전화 모니터링 등) <p>(4) 사업운영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 사업홍보 : 광역에서 운영(협조) · 민원관리 등 <p>(5) 기타 지자체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p>

3.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 관리, 민원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지정기간 : 2019. 7. 1. ~ 2021. 6. 30. (평가후 재지정 가능)
 - ※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4. 선정 방법

- 서류 심사 : 2019. 5. 15.(수)까지 제출
 -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추가공고 없이 선정적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2019. 5월 중 개최
 -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비공개 원칙)

5.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서비스 연계 계획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1부 (붙임 3)
-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공고기간 : 2019. 5. 9. ~ 2019. 5. 15.
- 제출기간 : 2019. 5. 9. ~ 2019. 5. 15.
- 제출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근무시간내 가능, 우편접수불가
- 제출처 : 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다문화팀) 방문접수
- 통보방법 : 신청기관 개별 통지
- 문의전화 : ☎ 02-3396-5433 (중구청 여성보육과)

6.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단, 보완 요청한 서류 제외)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 선정자로 결정함
- 심의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여성보육과)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보육과(☎3396-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19년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아이돌보미 등록·운영 등 계획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관 운영 관리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서비스제공기관 예산편성(안)의 형식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붙임 3]

아이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연 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 내용	비 고
계	건			

※ 가족·아동 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증명 서류(협약서 등 사본)

[참고자료]

서비스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봄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가정 및 아이돌봄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을 것 3) 아이돌봄미 채용 및 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예산관리, 홍보,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할 것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 자격 및 운영 기준에 준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아이돌봄미	법 제7조(아이돌봄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86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변화하는 문화예술 요구에 맞춰 중구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변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의 역할 전환(제1조)
 - 기존 공연장 운영 중심에서 주민의 삶과 가까워지는 지역문화사업 중심으로 재단의 운영 방향 변화
- 재단의 사업 확대(제4조)
 - 주민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단 사업 내용 변경
- 임원 임명 방식 변경(제7조,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변경
 - 임원 관련 조항이 제7조, 제9조에 나뉘어 있어, 임원 임명 관련 내용은 제7조로 이동, 제9조 제2항 삭제
- 임원 명칭 변경(제7조~제9조)
 - 직제개편으로 임원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홍인동, 충무아트센터), 문의전화 : 3396-4612, FAX: 3396-8610, 전자우편 : bkm8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을 “지역문화진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
2. 구 문화예술회관 총무아트센터, 도서관, 문화공간 등 위탁 공공시설 운영
3. 문화예술교육
4. 문화복지사업
5. 지역문화예술가·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6. 문화창업지원
7.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8.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9.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중 “사장”을 “대표이사”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감사는 선임직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구청장
2. 대표이사
3. 문화예술 소관 국장
4. 예산업무 소관 국장

제8조 중 “사장”을 “대표이사”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문화진흥----- ----- -----.</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u> 2. <u>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u> 3. <u>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u> 4. <u>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u> 5. <u>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p>제4조 (재단의 사업) ----- 지역문화진흥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u> 2. <u>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도서관, 문화공간 등 위탁 공공시설 운영</u> 3. <u>문화예술교육</u> 4. <u>문화복지사업</u> 5. <u>지역문화예술가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u> 6. <u>문화창업지원</u> 7. <u>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u> 8. <u>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u> 9. <u>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u> 10. <u>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p>제7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생략)</p> <p>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지역문화기획,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p>	<p>제7조(임원) ①----- 대표이사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대표이사는 ----- -----.</p>

-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⑤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가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재단을 통할한다.
- ③ (생략)

제9조(이사회) ①(생략)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 1. 구청장
- 2. 사장
- 3. 행정관리국장
- 4. 기획재정국장
- ③~⑤ (생략)

④ 대표이사를 -----.

- ⑤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감사는 선임직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구청장
2. 대표이사
3. 문화예술 소관 국장
4. 예산업무 소관 국장

제8조(임원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 ② 대표이사는-----.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현행과 같음)

- ② <삭제>
- ③~⑤ (현행과 같음)